



한번 만들면 끝? 규제, 정기적으로 검증대에 세우다

- 규제개혁위원회, 기술발전·현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주기적 정비 -

- ✓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하여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옆면과 뒷면 외에 앞면에도 광고 표시를 허용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뒷받침한다.
- ✓ 대학이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대학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 ✓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청소년수련지구에 위해성이 낮은 휴양콘도미니엄과 목욕장 입주를 각각 허용하여 국민 여가활동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종석, 이하 위원회)는 지난 10.13(금) 「'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상 행정규제에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것으로, 기한 도래시 경제·사회·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의 남설 방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이 규제 신설·강화시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도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올해는 375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경총, 중기중앙회 등)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109건의 규제를 정비키로 의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출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대출모집인)가 하나의 금융회사에 전속되어 해당 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하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22조('21.3 제정)상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하였다.
 - 동 규정이 제정된 '21년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대출금리로 서민의 금융부담이 높아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 대출모집인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 금융회사간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 아울러 형태가 엇비슷한 택배차량 등은 물류센터 주차시 식별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용 차량의 앞면 광고표시를 허용토록 하였으며,
 -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대학 내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체육시설 종류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 또한, 기술발전에 따른 온라인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활성화되는 등 교육환경이 바뀌었음에도 교육장을 확보해야만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낡은 규제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규제개혁위원회 주요 권고사항 (상세내용 불임) >

권고 내용	소관
① 둘 이상의 금융회사 대출상품 취급을 금지한 '대출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	금융위
② 체육활동 지도 수요가 없는 '골프장 내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폐지	문체부
③ 경비업 허가·변경 허가시 '교육장 확보 요건' 폐지	경찰청
④ 택배 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차체 앞면 광고 허용	행안부
⑤ 대학교 내 옥외 광고물 표시 허용	행안부
⑥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을 先조성·後지정 → 先지정·後조성으로 개선	과기부
⑦ 직장(500명 이상) 내 체육시설 종류 규제 완화(2종류 이상 → 1종류 이상)	문체부
⑧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휴양콘도미니엄업, 청소년수련지구 내 목욕장업 허용	교육부 여가부
⑨ 건설 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지침과 서식 간 상이한 기준·내용 통일	국토부
⑩ 휴대폰 지원금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의 범위 축소	방통위

-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혁신은 저수지 수질관리와 같다”고 비유하며 “기술 발전과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규제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 “규제개혁위원회가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엄격히 심사하는 것과 함께, 이미 만들어진 규제도 꼭 필요하지 않다면 폐지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개선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과 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 법령 정비 속도를 제고하는 한편,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지속 확인·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 【붙임】 위원회 주요 권고사항 상세 내용

담당 부서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박은경 (044-200-2412)
		담당자	사무관 손지아 (044-200-2442)



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한 자리에서 비교·선택할 수 있습니다.

- ▶ (현황)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대출모집인(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은 1개 금융회사에 전속되어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 가능
- ▶ (개선) 대출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금융회사간 경쟁 촉진

☞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회사원 A 씨는 주택 구입을 앞두고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여러 회사 상품을 비교해 선택하고 싶지만, 은행마다 찾아다닐 시간이 없어 대출모집인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A 씨가 만난 대출모집인은 1개 금융회사 상품만 판매할 수 있다며 다른 은행 상품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한다.



☞ 앞으로 소비자는 대출모집인(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금융회사간 경쟁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② 교습행위도 없는데... 골프장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폐지합니다.

- ▶ (현황) 교습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특정 체육시설업에 대해 체육지도자 의무 배치
* 18홀 ~ 36홀 이하 1명 이상, 36홀 초과 2명 이상
- ▶ (개선) 체육지도자 필요성과 수요가 낮은 골프장은 체육지도자 의무 배치 대상에서 제외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골프장 사업자 A 씨는 골프 교습 프로그램 없이 골프장을 운영 중이나, 일정 규모 이상 골프장의 경우 국가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인 체육지도자를 의무 채용하게 되어있어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을 지고 있다.



☞ 앞으로 정부는 골프장의 교습행위 수요와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을 제외할 예정이다.

③ 현장·온라인교육이 많은데... 경비업 하려면 교육장이 꼭 필요할까요?

- ▶ (현황) 경비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함

* 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5명, 시설경비업·기계경비업 10명, 특수경비업 20명

- ▶ (개선)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기준 폐지

☞ 경찰청 / 「경비업법」 및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

A씨는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 자본금을 마련해 법인 설립을 완료했으나, 10명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교육장을 포함한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은 A씨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었다. 특히 최근 현장 방문교육과 온라인 직무교육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교육장을 확보해야만 하는 시설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느꼈다.



☞ 정부는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경비업 시설기준에서 교육장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비업의 과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④ 엇비슷한 택배 차량, 앞면 광고 허용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 ▶ (현황) 사업용 자동차 등은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에만 광고 표시가 가능함

- ▶ (개선) 사업용 자동차 등은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앞면을 포함하여 전면(全面)에 광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

☞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사업용 화물차를 운행하는 A씨는 물류센터 주차시 사업체 확인이 힘들어 택배 물품이 잘못 실리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자 차량 앞면에 사업체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차량 앞면 표시광고는 불법이라며 벌금 처분을 받았다.



☞ 앞으로 정부는 교통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자동차 앞면에도 광고물 표시를 허용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해나가도록 규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⑥ 대학교 내 옥외광고물 표시가 허용됩니다.

- ▶ (현황)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병원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됨
- ▶ (개선) 광고노출 대상이 성인인 대학교는 옥외광고물의 표시를 허용하도록 개선
☞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A 광고사는 B 대학 건물에 옥외광고판을 설치하고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B 대학도 광고 수익이 대학 재정에 기여할 수 있고, 이미 대학 내 많은 민간 상업시설이 입점하여 간판 광고 등이 이뤄지고 있어 광고사와 계약을 희망하나 규제로 인해 포기했다.



☞ 앞으로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대학의 옥외광고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의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대학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⑥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진흥단지 지정제도를 정비합니다.

- ▶ (현황) ▲SW사업자 25인(서울 50인) 이상 상주 ▲SW관련 시설·기관 보유 ▲기반시설 보유 등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SW진흥단지로 지정(00년 제도 도입 후 지정 사례 전무)
- ▶ (개선) 기존 先조성→後지정 방식을 벗어나 先지정→後조성 방식이 가능하도록 SW진흥단지 지정 요건을 개선하고, 과기부의 'SW융합클러스터' 등 유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SW산업 집적지 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개정

청년 사업가 A 씨는 친구들과 00 시에 작은 규모의 로봇 개발 회사를 설립하였다. 회사도 키우고 해외 진출도 꿈꾸었지만, 지역 내 이용가능한 장비·시설이 거의 없고 유능한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이 소프트웨어 진흥단지로 지정될 경우 자금·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들었으나 지정 요건이 까다로웠고, 수도권 이전도 알아보았으나 높은 물가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의 기로에 처해 있다고 한다.

☞ 앞으로 SW 기업에 첨단 시설·장비 이용,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SW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역 특화 SW 융합산업의 촉진과 일자리 창출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⑦ 직장 내 체육시설 종류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합니다.

- ▶ (현황) 상주직원 500명 이상인 경우 직장 내 2종류 이상 체육시설 설치 의무
- ▶ (개선) 직장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체육시설 종류를 2종류에서 1종류로 완화
 -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500명 이상 상시 근로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 A 씨는 직원복지시설로 직장 내 헬스장과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은 이용률이 낮은 탁구장을 없애고 헬스시설을 확장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두어야 한다는 규제 때문에 난감하다.



☞ 앞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육시설 종류를 선정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종류 관련 규제를 우선 완화하고, 향후 체육시설 종류를 규제하는 방식보다 직장별 특성에 맞는 시설을 자율 설치토록 지원·장려하는 진흥정책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⑧ 위해성이 낮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휴양콘도미니엄업, 청소년수련지구 내 목욕장업 입주가 허용됩니다.

- ▶ (현황) 관광숙박업으로 분류된 휴양콘도미니엄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치 금지시설 해당,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시 찜질방 등을 포함한 목욕장업 설치 제한
- ▶ (개선)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서 제외 '청소년수련지구 내 금지시설'에서 목욕장업 자체를 삭제
 - ☞ 교육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업자 A 씨는 중학교 인근에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고자 교육환경평가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았다. 휴양콘도미니엄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금지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A 씨는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휴양콘도미니엄을 교육환경 위해시설로 보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찜질방을 개설하고자 하는 B 씨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청소년수련지구 내에는 찜질방을 포함한 목욕장업이 금지시설로 되어 있어 신고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 앞으로 정부는 유해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고려해 휴양콘도미니엄을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 예외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수련지구내 찜질방, 목욕탕, 사우나 등도 설치가 가능해져 영업의 자유가 확대되고 지역 주민 등 이용객의 편의성도 증가될 전망이다.

⑨ 건설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상이한 지침, 서식을 통일합니다.

- ▶ (현황) 건설자재 품질시험·검사의 기준인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실적 신고 서식 등이 달라 업무상 혼선 발생
- ▶ (개선)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각종 서식 등 일치하지 않는 내용 통일
 -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

건설사업자 A 씨는 건설 자재인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실시하고자 관련 기준을 찾았다.

하지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상 콘크리트 품질검사 시험빈도(표준 120㎡당 1회, 지침필요시) 등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어떤 기준에 맞추어 품질시험을 실시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또한 건설공사 실적 신고서 서식이 각기 달라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 앞으로 건설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표준시방서·지침, 각종 서식간 상이한 기준을 통일하여 불필요한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⑩ 휴대폰 불법지원금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 (현황)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이 핸드폰 판매 지원금을 차별(과다) 지급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긴급중지 명령 이외에도 ▲번호이동 제한 ▲신규가입 제한 ▲기기변경 제한 명령까지 가능토록 시행령에 규정
- ▶ (개선) 상위법에 근거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만 가능하고,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제한 등 긴급명령은 삭제
 - ☞ 방송통신위원회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개정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 고객이 번호이동 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보다 22 만원을 더 많이 지급해왔다. 이에 A 씨는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30 일간 번호이동 영업 긴급중지 명령을 받았다.



☞ 정부는 단말기유통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 허용하고 있는 영업행위 제한 등의 긴급명령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사업자 등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